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전 문 위 원 실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4. 2. 17.

나. 회부일자 : '94. 2. 17.

3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등 지방 중소기업지원사업이 도 주관하에 지방재정과 연계,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
-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, 기술집약화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기술개발사업, 정보화사업,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, 사업전환 및 이양, 창업지원사업, 소기업지원사업 등 구조조정사업추진과
- 기업구조조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

가. 기금조성근거법 명시 (안제1조)

-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나. 중앙정부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 (안제4조)

다. 기금의 관리운용과 자금계정 신설 (안제5조)

- 금융기관,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위탁근거 마련

라.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관리 운용사항 신설
(안제17, 18, 19, 20, 21조)

- 용자대상, 용자절차 및 용자조건, 용자금의 상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
마.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(안제24조)

- 위탁기관 기금관리 상황보고 및 이에 대한 검사, 조사 규정 신설

바.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(안제25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“중소기업운전자금”과 “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”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'94. 1. 7자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“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”의 지원사업도 도 주관하에 지방재정과 연계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

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, 기술집약화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, 정보화사업, 자동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